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(제 17 조 제 1 항 관계)

⑪

제 _____ 호
년 월 일

〇〇보건소장

건강 진단 통지서 (권고)

귀하는 결핵환자와의 접촉으로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따라서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[법]이라고 함.)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기간까지 의사의 건강 진단을 받도록 권고합니다.

또한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 17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건강 진단 조치를 실시합니다.

기

1 건강 진단의 실시 이유
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

2 검진 기간
권고 받은 날로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

3 건강진단의 방법
 흉부엑스선 직접촬영
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
 Q F T 검사 (T-S P O T 검사)
 기타 (_____)

4 검진 장소 (의료기관 또는 보건소)
명칭 _____
주소 _____

담 당: _____